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ACRC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154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출산·양육 관련 고충 해소」

대상기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공립대학교(55개)

의 결 일 2020. 4. 20.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출산·양육 관련 고충 해소」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각 국·공립대학교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4월 20일

위원장 박 은 정

위 원 이 건 리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황 성 주

위 원 홍 인 옥

위 원 김 수 정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별 지]

국민의 의견을 위한 상설기관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2)

- 출산·양육 관련 고충 해소 -

2020. 4.



국민권익위원회

A O R C

■ 목 차 ■

I. 추진 배경	1
II. 일반 현황	2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출석일수 인정 기준 개선	4
2.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공결 인정	6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처리 대상 사업 추가	9
I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2

I

추진 배경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 국정과제 :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 삶의 영역 '돌봄'

□ 전국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인구절벽 현상 심화 우려

※ 연간 출생아 수 현황 : 357,800명('17년) → 326,800명('18년) → 303,100명('19년)

□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일부 제도의 미흡으로 출산·양육 과정에 고충을 유발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모(母)의 출산으로 유치원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을 받지 못해 부득이한 결석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 원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하며,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공결처리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출산으로 인한 결석 시 학점에 불이익

※ 학교 내부규정으로 공결대상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친족 사망 등의 경우만을 공결 인정 가능한 경조사로 규정한 대학이 존재

○ 출산가정에 지원될 수 있는 일부 서비스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누락될 소지

※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공통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지원 서비스 통합 신청 대상에 미포함

□ 따라서, 우리 위원회 국민소통창구에 접수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제도개선 추진

※ 개선과제 발굴원 : 국민콜110,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제안 등

II

일반 현황

□ 최근 3년간('17~'19) 출생아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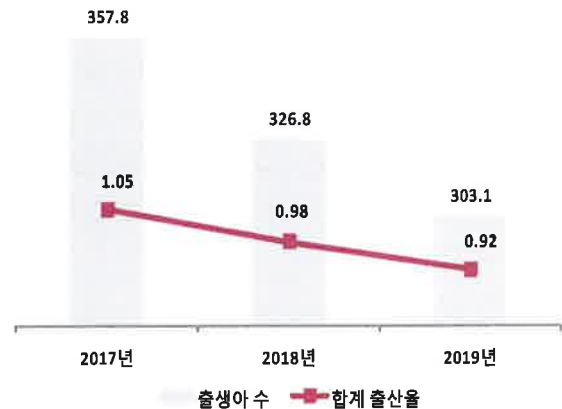
- 연도별 출생아 수는 357,800명('17년) → 326,800명('18년) → 303,100명('19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합계출산율은 1.05명('17년) → 0.98명('18년) → 0.92명('19년)으로 '18년부터 1명 이하로 감소

(단위: 천 명, 명)

구분	2017	2018	2019**
출생아 수	357.8	326.8	303.1
합계출산율*	1.05	0.98	0.92

*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통계청이 '20.2월 발표한 잠정 출생통계 확정결과는 '20.8월 발표 예정



□ 출산·양육 관련 인식 조사결과

- 국민들은 출산 및 육아지원 확대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

구분	내용
2017년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인구보건복지협회)	· (조사대상) 만20~59세 남녀 1,000명 대상 · (저출산 원인) 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64.3%), ② 일과 육아 양립 문화 미흡(33.3%)으로 응답 ·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① 출산 및 육아지원 확대(50.4%) ②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개선(42.0%), ③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32.9%)로 나타남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조사대상)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2,500가구 · (육아지원정책 방향성) ①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7점 만점에 6.3점), ② 육아지원 서비스 질 제고(6.2점), ③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확대(6.2점)

□ 출산·양육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국정과제 포함)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해소와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 마련을 국정과제 과제로목표로 추진중

< 국정과제 중 출산·양육 관련 과제 >

국정과제	과제목표
⑩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④⑧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결혼·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각종 지원 제도)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

< 출산·양육 지원제도 현황 >

구분	관련 제도
임신·출산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양육 지원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보육료·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건강검진, 만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 사업별로 지원대상이 상이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출석일수 인정 기준 개선

[교육부]

□ 현 황

-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유아학비를 지원
 - ※ 유아학비 지원액(월 기준) : 국공립유치원(6만원), 사립유치원(24만원)
- 원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하며,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다만, 교육부의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라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질병·부상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

□ 문제점

- 모(母)의 출산으로 유치원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가능여부 불분명
 -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우, 경연대회 참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석인정이 가능할지 여부가 모호
 - ※ 교육부에서는 해당내용을 근거로 출석인정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유치원에서는 관련 지침에 모(母)의 출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출석인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응답('20.1월 권익위 실태조사)

【2020년 유아학비 지원계획 :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원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형제·자매·부모 결혼, 본인 입양, 부모·조부모·외조부모 등의 사망

- 모(母)의 출산으로 인한 보호자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유치원을 결석하였음에도, 월 교육일수 부족으로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 유발

- 동생 출산으로 큰 아이가 유치원을 얼마동안 가지 못해 출석일수가 모자르니 원비를 내라고 유치원에서 연락을 받음, 교육청에 문의하니 경조사는 지침 상 출석이 인정되나, 출산에 대한 것은 없어 출석인정이 안될 수 있고, 원장의 재량이라고 하였는데 개선이 필요함('19.1월 국민신문고)
- 둘째 아이의 출산으로 첫째 아이가 유치원을 등원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교육청은 관련지침에 따라 어머니의 출산으로 인한 일정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회신('18.5월 국민신문고)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20. 10.)

- 모(母)의 출산에 따른 유치원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출석인정 기준 개선

- 출산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결석사유 증빙 서류 구체화

※ 어린이집 보육료의 경우 부모 출산 시 출석으로 인정됨을 규정(출산일 기준 최대 2개월 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2020 보육사업안내 p336】

- (출석 인정 특례) 아래와 같은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 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결석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환자명, 병명, 진료(입원)기간, 의료기관명, 진료의사명·면허번호, 직인 반드시 포함),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유아학비 지원계획 개정(교육부)

□ 현 황

- 연간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정부는 출산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며, 대학생인 부모를 위한 각종 제도 역시 도입되는 추세

※ 연간 출생아 수 현황 : 357,800명('17년) → 326,800명('18년) → 303,100명('19년)

- 대학생의 모성보호를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양육 필요 또는 여학생의 임신·출산 시 휴학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16.3월, 고등교육법 제23조의4 신설)
- 대학생 부모를 어린이집 입소순위 1순위인 맞벌이 가구로 인정 (2020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 문제점

-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공결처리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민원 발생

■ 직장을 다니다가 학사 편입을 한 한가정의 가장임, 결혼 4년차에 어렵게 아이를 가져 출산 예정인데 **아내가 출산을 해도 학교의 출석은 결석처리가 된다고 함**,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시기에 아이를 낳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단 몇일이라도 출산을 한 임신부와 남편에게 출산휴가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임, 저와 같은 일을 겪을 학생들이 학업과 육아를 같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임('18.8월 국민신문고)

- 각 대학에서는 학교 내부규정으로 공결대상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을 공결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대학이 존재
- 각종 경조사를 공결 인정 가능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친족 사망 등의 경우만을 규정

- ○○대학교는 「학사내규」에 공결사유로 친족사망(부모 및 형제자매 5일, 외조부모 2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은 공결사유로 미규정**(‘2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대학교는 「교학규정」에 출석인정사유로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등의 사망 시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은 미규정**(‘20.1월 권익위 실태조사)

- 최근 출산 장려를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 및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결석 시 공결처리 되지 않아 **학점에 불이익 발생 우려**

□ 개선방안(조치 기한 : '20. 10.)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적정한 기간 동안 공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처리 요청 시 제출서류 구체화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 시 출석인정을 규정한 사례】

강원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28조(공결) ①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을 점검한 결과 결석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병역 동원 또는 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된 경우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 행사에 참가한 경우
3. 교외 수업 등에 따라 다른 교과목의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단, 교외 수업 등을 운영하는 교과목의 담당 학부·학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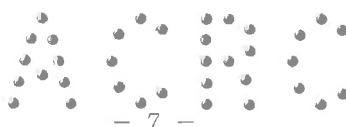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6. 기타 상당한 이유로 학부·학과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결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은 지침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단과대학의 장



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공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충북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2조(공결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절수업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교육실습, 교외교육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5. 국가가 정한 투표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대상	기간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본인	20일
	배우자	10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7.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② 학생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사전 또는 사후(7일 이내)에 공결승인 신청서(서식 제8호)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학장은 승인된 공결자 명단을 지체없이 해당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공결 관련 대학 학칙·규정 개정(각 국·공립대학교)

< 국립대학교(47)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복지대학교

< 공립대학교(8) >

서울시립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도립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충청도립대학교

(* 대학알리미 공시대상대학 현황 기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현 황

- 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자가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중
- 각 지자체에서는 전국 공통서비스*가 기재된 표준 신청서식(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지자체 시행 출산지원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체 서식을 마련하여 운영
- * 전국 공통서비스 :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전기료 경감(출산가구·다자녀), 다자녀 도시가스료·난방비 경감

□ 문제점

-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공통으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출산지원서비스 통합 처리 대상에 미포함
- ※ 현재 출산지원서비스 통합처리 대상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포함할 필요(’20.3월 지자체 담당자 의견청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 선정기준
 - (기저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등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만4,000원 / (조제분유) 월 8만6,000원

※ ’20년부터 만 2세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

- ’20년 기준중위소득 80% 산정기준 : (2인 가구) 2,394,000원 (3인 가구) 3,096,000 (4인 가구) 3,799,000원 등

(출처 : 아이사랑보육포털)

- 출산가정에 지원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출산원스톱 서비스의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혜택이 누락될 소지**

- 기저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으나, 보건소에서 대상자임을 문자나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있었음('20.1월 국민신문고)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청일이 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바람에 2개월분을 제외한 22개월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사소하게 여기지 말고 제대로 처리해주기 바람 ('19.3월 국민신문고)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이가 12월생으로 2월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됨('19.3월 국민신문고)
- 임신중 엽산제를 받으러 보건소에 두 번이나 방문했었으나, 기저귀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아이는 9월에 태어났는데 11월에 기저귀 지원에 대해 알게되어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여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함('18.12월 국민신문고)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 서식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표준 신청서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외하고 운영

※ 충남 예산군, 광주 북구, 전남 함평군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포함하여 통합처리중

□ 개선방안(조치 기한 : '21. 4.)

- 출산지원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출산가정이 신청 가능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표준 신청서식 개선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전국 공통서비스에 포함
-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개선(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개선안(예시)】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생 략)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지자체 별로 정함)	출산 지원금	[] 둘째자녀(이름:) [] 셋째자녀(이름:) [] 넷째자녀 이상(이름:)
	출산용품교환권	수령지 주소 :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지원
	다동이행복카드 (신분확인용)발급	카드 수령지 주소 : ※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00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문의: 0000-0000)
	유축기 무료대여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2-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모유수유 클리닉	[] ※ 사전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예약은 000보건소(02-000-0000)로 전화예약도 가능합니다.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가정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1. 국외출생 여부 : [] 예 [] 아니오 2. 복수국적 여부 : [] 예 [] 아니오
	아동수당		[] 아동수당 * 출생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이 기재
	해산급여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다자녀(2째아 이상) 가구(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 장애인 가구(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출산가구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과제명	조치사항	소관기관	조치기한
유아학비 지원을 위한 출석일수 인정 기준 개선	- 모(母)의 출산에 따른 유치원 결석 시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출석인정 기준 개선 - 출산으로 인한 출석인정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결석사유 증빙 서류 구체화 ⇨ 유아학비 지원계획 개정	교육부	'20.10월
대학생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공결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적정한 기간 동안 공결이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 공결 처리 절차 및 공결처리 요청 시 제출서류 구체화 ⇨ 공결 관련 대학 학칙·규정 개정	국·공립대학교	'20.10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처리 대상 사업 추가	출산지원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출산가정이 신청 가능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표준 신청서식 개선 ⇨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개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1.4월

정 본 입 니 다 .

2020. 4. 21.

국 민 권 의 위 원



A C B C